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398

발의연월일: 2024. 8. 30.

발 의 자:배준영·구자근·강명구

강대식 · 김소희 · 박준태

이성권 · 김종양 · 신동욱

김형동 의원(10인)

제안이유

행정·공공기관의 업무처리 방식이 디지털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행정정보시스템의 복잡도와 정보시스템간 연계도가 증가함에 따라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법·제도는 미비한 실정임

특히 '23년 11월 발생한 행정전산망 장애를 비롯하여 차세대 정보화사업 등 주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연이어 오류가 발생하여 국민의 일상에 지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영향을 미치고있는바, 전자정부 업무에 대한 주무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를 컨트롤타워로 한 정보시스템 장애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정보시스템 및 운영시설에 대한 점검, 정보시스템 장애상황 관제 및 재발방지를 위한사후관리 체계 등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전자정부서비스의 안정성을확보하고 행정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보자원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11호 개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 또는 이용하는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등으로 정보자원의 범위 확대

- 나. 정보시스템 장애관리체계 마련(안 제56조의2 개정)
 - 1)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대응·복구 등을 위한 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2) 행정기관등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지침에 따라 장애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3)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 장애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 기관등의 장에게 행정·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다. 정보시스템 및 운영시설 점검체계 구축(안 제56조의3 신설)
 - 1)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 및 운영시설에 대해 현황조사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2) 행정기관등의 장은 개선권고에 대한 조치계획과 결과를 행정안전 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함.
- 라. 정보시스템 장애상황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안 제56조의4 신설)
 - 1)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시스템 장애상황 공유ㆍ지원체계를 구축하

고 각 기관의 장은 장애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 장애원인 파악을 위한 조사·분석을 할 수 있고 필요 시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1. "정보자원"이란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자원을 말한다. 다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나목에서 라목까지에 한정한다.
 - 가. 행정정보
 - 나. 정보시스템
 - 다.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 라.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및 건축설비(이하 "정보 시스템 운영시설"이라 한다)
 - 마. 정보화 예산
 - 바. 정보화 인력

제56조의2의 제목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대응 등)"을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대응 및 복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정보시스템 운

영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장애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 수립지침(이하 "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기관등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 2. 정보시스템의 중요도에 따른 장애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 3. 장애 예방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4.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장애상황의 신속한 전파, 복구 및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대응 및 복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의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복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수립지침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정보시스템의 현황 및 장애 발생 사례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에 대하여 정보시스템의 장애예방·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및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의3을 제56조의5로 하고, 제56조의3 및 제5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6조의3(정보시스템 현황조사 및 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정보시스템(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황조사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36조의2제2항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 관계 기관 합동조사 방안 및 중복 점검 방지 등의 내용을 포 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현황조사 및 점검 결과, 정보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 권고를 받은 행

정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계획과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현황조사 및 점검, 시행계획의 수립, 개선 권고, 조치계획·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6조의4(정보시스템 장애상황 및 사후관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보시스템에 장애 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 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요 정보시스템의 장애상황을 통합적으로 관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하여 장애상황을 인지한 경우에는 해당 장애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복구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해당 상황을 전파· 공유하고 기술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 장애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의 발생 원인과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분석(이하 "장애사후관리"라 한다)을 직접 실시하거나,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장애사후관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수 있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장애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정보시스템 장애의 발생 원인 및 대응과정 등과관련된 자료의 열람 및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장애사후관리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경우 개선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계획과 결과를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정보시스템 장애상황 관리 및 장애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1조제1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의2. 제5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대응 및 복구 등 에 관한 업무
 - 3의3. 제56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 현황조사 및 점검 등에 관한 업무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혂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0. (생략)

11. "정보자원"이란 행정기관등 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 정보의 수집 · 가공 · 검색을 하기 쉽게 구축한 정보시스 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 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및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

12. ~ 15. (생 략)

제56조의2(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대응 등) ① 행정기관의 장 의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

개 정

아

1. ~ 10. (현행과 같음)

11. "정보자원"이란 행정기관등 이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다 음 각 목의 자원을 말한다. 다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나 목에서 라목까지에 한정한다. 가. 행정정보

나. 정보시스템

다.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 용되는 정보기술

라.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 요한 건축물 및 건축설비 (이하 "정보시스템 운영시 설"이라 한다)

마. 정보화 예산 바. 정보화 인력

12. ~ 15. (현행과 같음)

제56조의2(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대응 및 복구 등) ① 행정안 은 해당 기관 및 그 소속 기관 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정보시스템 운영시 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을 <u>서 같다) 장애관리를 위한 계</u>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획(이하 "정보시스템 장애관리

서 같다) 장애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정보시스템 장애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 수립지침 (이하 "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 2. 정보시스템의 중요도에 따 른 장애관리기준에 관한 사 항
- 3. 장애 예방을 위한 정보시스

 템의 구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4.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장애상황의 신속한 전파, 복
 구 및 재발 방지에 관한 사
 항
- 5. 그 밖에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대응 및 복구 등을 체 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 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는 사항

-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립지 침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의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복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을 수 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수립지침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해당기관이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정보시스템의 현황 및 장애 발생 사례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행정기관등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에 대하여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대응 및 복구등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 른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에 정보시

<신 설>

스템의 장애 예방·대응 및 복 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56조의3(정보시스템 현황조사 및 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정보시스템(정보시스 템 운영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황조사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6 조의2제2항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제46조제3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및 점검을 실시 하려는 경우 관계 기관 합동조사 방안 및 중복 점검 방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현황조사 및 점검 결과, 정보시스템의 개선이 필

<신 설>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계획과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현황조사 및 점검, 시행계획의 수립, 개선 권고, 조치계획·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의4(정보시스템 장애상황 및 사후관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 중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요 정보시스템의 장애 상황을 통합적으로 관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하여 장애상 황을 인지한 경우에는 해당 장애상 애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복구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해당 상황을 전파・공유하고 기술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 템 장애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의 발생원인과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분석(이하 "장애사후관리"라한다)을 직접 실시하거나, 해당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장애사후관리를 실시하게 하고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장애사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 당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정보 시스템 장애의 발생 원인 및 대응과정 등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 및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 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

제56조의3 (생략)

제71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각 중앙사무관장기관 소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이 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 3. (생 략)

<u>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u> <u>다.</u>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장애사후 관리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 기관등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 권 고를 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계획과 결과를 행정안 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정보시스템 장애상황 관리 및 장애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제56조의5</u> (현행 제56조의3과 같음)

세71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Ē) (1)

1. ~ 3. (현행과 같음)

<u> <신 설></u>	3의2. 제56조의2에 따른 정보
	시스템의 장애 예방·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업무
<u> <신 설></u>	3의3. 제56조의3에 따른 정보
	시스템 현황조사 및 점검 등
	에 관한 업무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